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1. 27.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1. 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4. 11. 18.

다. 상정일자: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4. 11. 27.)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 가. 제안이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법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용어와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용어 및 인용 조문 등 정비(안 제1조~제8조)

## 3. 검토보고(전문위원 권하나)

- 동 조례 개정안은 2024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문화재’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정책범위를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고<sup>1)</sup>,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달라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여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23. 5. 16.)되고, 2024년 5월 17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재”명칭이 “국가유산”등으로 변경되었음.
- 이에 따라 기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나뉘던 4개 분류체계는 앞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분류로 바뀌게 됨.

[표 1] 국가유산 체제전환관련 기준안

현 행	변경 용어('24.5.17.부터)
문화재청	국가유산청
문화재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문화재보호법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부터 안 제8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까지 총 8건의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1) ‘문화재’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재화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 즉 소유와 매매가 가능한 재화로 보는 관점이 강해 보호해야 할 공동의 자산으로서 부적절한 용어라는 비판이나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서 일재의 잔재가 묻은 용어라는 비판이 존재해 왔음.

[표 2] 일괄개정 조례안 목록

순번	조례명	부서명	조항	개정이유
1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감사담당관	제2조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전환
2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자치행정과	제3조	인용법령 및 문화재 명칭 변경 「문화재보호법」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3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구민안전과	제31조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전환
4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 동행과	제4조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전환
5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광정책과	제10조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전환
6	마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고용협력과	제2조	인용법령 및 문화재 명칭 변경 「문화재보호법」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7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재산세과	제3조	인용법령 및 문화재 명칭 변경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8	마포구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	부동산 정보과	제2조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전환

- 본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에 맞춰 우리 구 조례 가운데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문화재 관련 종전의 법률을 인용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